



제08-01호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hhyun@kiep.go.kr, Tel: 3460-1050)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jdkim@kiep.go.kr, Tel: 3460-1028)

정형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위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

강준구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위원 (jgkang@kiep.go.kr, Tel: 3460-1058)

주요 내용

- ▣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양적·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함.

 - 2005년 이후 FDI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M&A형 FDI와 R&D 부문 FDI의 실적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힘.
- ▣ 우리나라 FDI 실적 부진의 원인은 M&A형 FD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중소기업 M&A시장의 미성숙, 근본적으로 취약한 국내투자환경, 경제자유구역의 FDI관련 제도적 문제 등에 기인
- ▣ FDI 실적 부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FD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

 - M&A형 FDI유치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국내 중소기업 M&A시장 활성화, M&A 관련 세제 개편
 -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실시
 - 투자환경평가와 개선작업 추진 및 FDI 행정 체계 강화
 - R&D 부문 FDI유치를 위한 정부주도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고급 인력 유치 노력
 -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체계 강화,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개선

1. 우리나라 FDI의 문제점

가. 최근의 FDI 실적 부진

-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입은 실적이 부진한 편임.

표 1-1. 국가별 국내자본대비 FDI 유치현황

(단위: %)

지역	1991년	1996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세계	3.13	5.96	12.50	9.30	7.47	8.52	10.35	12.62
EU	4.75	6.89	22.36	17.04	11.82	8.08	18.22	18.10
북미	2.36	6.15	8.99	4.77	2.83	5.64	5.69	8.53
동아시아	2.63	9.26	11.51	8.94	8.13	10.01	9.95	10.09
중국	3.91	14.87	10.54	10.41	8.63	8.05	8.78	8.00
대만	3.08	2.86	7.27	2.66	0.83	2.78	2.29	10.32
일본	0.12	0.02	0.62	1.01	0.66	0.75	0.26	-0.63
한국	0.94	0.96	2.90	2.13	2.41	4.47	3.04	1.92
홍콩	4.39	21.38	55.68	26.40	40.59	96.38	90.40	103.89
싱가포르	33.64	27.30	60.92	31.93	52.21	77.46	57.62	79.46

주: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FDI flows.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로 국내자본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이 감소하였으며(표 1-1 참조) 2007년에는 신고기준 FDI 유입액도 105.1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5% 감소함.
- 스톡(Stock) 기준으로도 전 세계 GDP 대비 FDI 스톡이 23% 내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 대에 머물고 있어서 일본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임(표 1-2 참조).

표 1-2. GDP대비 FDI 스톡 비중

(단위: %)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	19.7	20.7	22.3	23.2	22.6	24.8
EU	28.1	31.3	33.0	34.2	33.1	38.0
북미	14.4	13.8	14.2	14.4	14.2	15.0
동아시아	32.9	27.1	27.4	27.6	27.5	29.1
일본	1.2	2.0	2.1	2.1	2.2	2.5
중국	17.1	16.6	15.5	14.3	13.7	11.1
홍콩	251.8	205.4	240.8	273.3	303.0	405.7
한국	8.8	8.3	8.2	8.7	8.3	8.0
대만	13.0	9.5	12.0	12.3	12.4	14.2
싱가포르	140.3	153.7	160.2	159.6	159.3	159.0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Templates/Page.asp?intItemID=3277&lang=1>).

나. M&A형 FDI의 감소

- M&A형 FDI는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꾀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인수대상 기업이 부도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대량 실직 방지와 M&A 이후 추가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큼.
- 우리나라 M&A형 FDI의 65~80%를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부문 FDI이므로 외국기업에 의한 M&A 증대는 서비스 FDI 증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전세계 FDI의 최근 증가세의 80%이상이 국경간 M&A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데 비해 한국의 M&A형 투자는 비중이 낮음.
- 전세계 M&A에 의한 FDI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세계경제의 불황 및 9·11테러 등으로 2000년 직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다시 증가함.
- 한국의 경우 역시 이러한 세계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M&A형 FDI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이며 2006년에 들어와서 M&A를 통한 FDI 유치규모는 급격히 하락함 (표 1-3, 그림 1-1 참조).

표 1-3. 우리나라의 M&A형 FDI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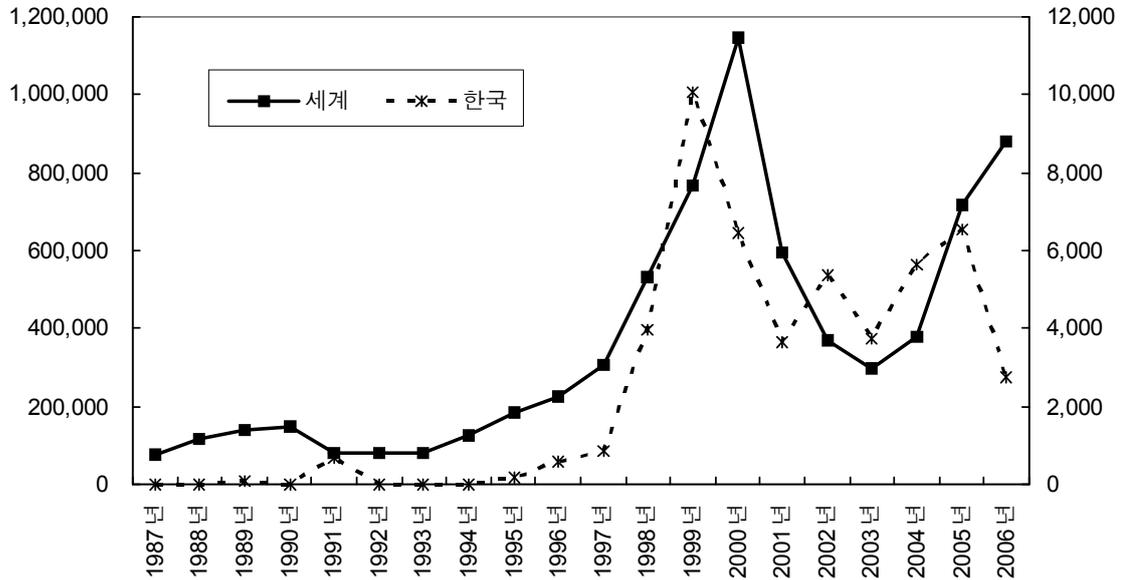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FDI 금액	10,267	5,075	3,809	5,114	9,262	9,594	9,046
증감율	△6.7	△50.6	△24.9	34.3	81.1	3.6	△5.7
M&A형	2,870	2,650	2,080	2,940	6,170	5,270	4,310
비중	28.0	52.2	54.6	57.5	66.6	54.9	47.6

자료: 산업자원부.

그림 1-1. 전 세계와 한국의 M&A형 FDI 유치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주: 왼쪽은 세계, 오른쪽은 한국임.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다. R&D 부문 FDI의 낮은 실적

■ 그동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R&D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함.

- 글로벌 기업의 선진기술과 지식의 국내 파급효과, 국내 연구역량과의 시너지 효과, 고급 R&D 인력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R&D 부문 FDI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금지원

■ 그러나 정책적 노력은 R&D부문 FDI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의 R&D 투자 중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임.

- 또한 지금까지 유치한 R&D 센터는 생명과학, 제약 등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보다는 전기, 전자, 화학 등에 편중되어 있음.

■ R&D 부문 FDI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이 저조하고 이공계 고급인력 공급이 부족한 것에 상당부분 기인함.

2. FDI 문제점의 원인

가. M&A형 FDI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중소기업 M&A 시장의 미성숙

■ M&A 대상 국내기업의 가치 상승

- 최근 몇 년간 국내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국내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짐.

■ M&A에 대한 기업소유주들의 인식

- 우리나라 기업오너들은 1대주주 자리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M&A를 통한 기업지배권 이전이나 2대주주 영입에 대한 저항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M&A 시도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의 미성숙

-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서비스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M&A를 통한 국내기업들의 규모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나, 중소기업들의 자금부족, 자금조달 기법 미숙, M&A 중개기관의 경험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M&A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 M&A 관련 거래비용이 높은 편임.

- M&A의 추진의 공통적인 걸림들은 관련 거래비용이 크다는 점이며 대표적으로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큼.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세는 양도차익의 25%와 양도가액의 10% 중 작은 것을 부과함.
- 이것은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높은 편임.

나. 취약한 투자환경

-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2004-2007)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취약함을 지적함(표 2-1 참조).
- 경영환경 중 세무와 노무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2007년에는 전년과 대비하여 세무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환경 중 특히 교통, 교육, 주거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표 2-1.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국내 주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가

	경영환경			생활환경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2004	17.5%	46.2%	36.3%	2004	27.4%	44.8%	27.8%
	2005	25.2%	48.0%	26.8%	2005	30.4%	38.8%	30.8%
	2006	23.6%	48.2%	28.2%	2006	37.4%	37.0%	25.7%
	2007	24.1%	50.6%	25.3%	2007	26.5%	46.2%	27.3%
세부 분야별 만족도		2006	2007		2006	2007		
	금융	25.4%	26.9%	교육	14.8%	13.4%		
	세무	20.7%	19.4%	의료	44.0%	31.2%		
	노무	18.6%	21.3%	교통	8.9%	7.5%		
	입지선정	22.9%	31.2%	주거	21.4%	14.2%		
	물류	34.6%	37.2%	비자	38.1%	32.0%		
	R&D	31.1%	33.2%	출입국	35.4%	29.6%		

자료: Invest Korea, 각연도(2004-2007).

- UNCTAD(2006)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잠재지수는 17위인 데 비하여 성과지수는 123위로 낮게 평가됨.
- 특히 2006년 투자유치 성과는 2005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짐.

표 2-2. 주요국의 FDI 유치 잠재력 및 FDI 유치 성과 변화

	FDI 유치 성과 지수(순위)			유치잠재력지수(순위)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캐나다	106	107	79	4	4	n.a.
중국	52	62	69	33	30	n.a.
체크	29	31	32	39	38	n.a.
프랑스	87	78	74	16	15	n.a.
독일	110	124	125	8	6	n.a.
일본	137	136	137	23	24	n.a.
인도네시아	136	106	95	103	100	n.a.
한국	116	115	123	17	17	n.a.
말레이시아	62	64	62	35	35	n.a.
싱가포르	6	6	5	2	2	n.a.
영국	94	47	34	3	3	n.a.
폴란드	59	60	57	45	44	n.a.
베트남	55	58	78	80	80	n.a.
미국	120	118	117	1	1	n.a.

주: 대상국은 총 141개국임.

자료: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pp220-221.

■ A.T.Kearney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점차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의 외국인투자 매력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표 2-3.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매력도 순위

	2003	2004	2005	2007
한국	18	21	23	24
중국	1	1	1	1
홍콩	22	8	10	5
싱가포르	28	18	18	7
일본	15	10	15	15
영국	7	4	4	4
미국	2	2	3	3

주: 1) 대상국은 2007년 기준 총 47개국임.

2) 2006년은 발표자료 없음.

자료: A.T.Kearney.

- 행정적인 문제로 투자환경개선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FDI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작업은 정책간 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고도의 정책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위상이 약함.
- 중앙정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관련기관들 간의 협력문제로 IK(Invest Korea)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다. 경제자유구역의 FDI 유치 실적 부진

- 특별법이 아닌 일반 개별법 절차에 따르므로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함.
- 절차적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추진 지연 및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
- 개발 관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전체적인 개발의 속도를 저해
- 경영환경: 노사갈등/인력확보 문제는 FEZ내 경영활동의 핵심사안
 - 2004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인지도 제고보다 노사갈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불허
- 경쟁국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가 약함.
-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가 없음.
- 해외유수 연구소, 대학 등 비상업적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결여됨.

- 국고, 지방비, 민자 등 FEZ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지원수단이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유기적인 국고지원이 미흡함.
- 도로, 공항, 철도 건설 부문은 건설교통부로, 항만건설부문은 해양수산부로 예산이 분산됨.
- 각 부처의 소관 지원사업 선정 시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을 제외하거나 타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 지자체도 관할 지역내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는 경향이 있음.
- 산업단지(산업자원부) 국고지원기준에 대해 역차별 발생
- 일반 산업단지는 100%지원(수도권 제외)이 기준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50% 안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위원회 의결 시 전액지원 가능)하여, 오히려 낮은 지원수준을 적용 받게 됨.

3.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가. M&A형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M&A형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
-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 간 M&A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재원이나 펀드가 필요함.
- 대손처리규정 신설 및 보완, 부채탕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관리기준 완화 등 부채 조정의 원활화 작업이 필요함.
- M&A 이후 구조조정으로 일시에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

간 경영권 신임과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절충식 고용승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의하면 대형 M&A는 상당부분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아직까지 사모펀드가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정도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향후 그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표 3-1 참조).
- 최근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사모펀드시장이 초기 단계이므로 해외사모펀드유치를 통한 자금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대체로 해외사모펀드의 국내기업 M&A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므로 이로부터 탈피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부각시키고 이를 활용해야 함.

표 3-1. 집단투자펀드에 의한 국경간 M&A(1990~2006년)

연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건수	비율(%)	금액(10억 달러)	비율(%)
1998	393	7.0	46.9	8.8
1999	567	8.1	52.7	6.9
2000	636	8.1	58.1	5.1
2001	545	9.0	71.4	12.0
2002	478	10.6	43.8	11.8
2003	649	14.2	52.5	17.7
2004	773	15.1	83.7	22.0
2005	889	14.5	134.6	18.8
2006	889	12.4	158.1	18.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2007).

주: 집단투자펀드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포함함.

- 국내 중소기업들 간의 M&A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규모를 확대하고 M&A형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는 소규모 M&A 컨설팅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M&A를 중개할 수 있는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M&A 전문기관 육성과 더불어 기업평가능력, 자금조달기법, 기업구조조정업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등 각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들은 M&A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임시로 인수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차입금 형태의 정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수·합병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함.
- 법인세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M&A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거래비용 최소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
- 독일의 경우 M&A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법인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95%를 비과세로 전환한 이후 M&A형 FDI 거래건수가 2003년 296건에서 2006년 512건으로 2004년 이후 매년 19% 이상씩 증가 함.
- 이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차익세 감면과 더불어 청산소득,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및 합병시 불용자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실시

- 서비스업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개방을 실시하여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 이는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독점적 지대(rent)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지원정책만으로는 시장규모의 확대와 기업규모의 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서비스업은 시장 독점적 이해집단의 존재와 경쟁제한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여야 함.
- 서비스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진입규제의 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설정하고 시장에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분명히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의 실시를 통하여 대내외 서비스시장 개방의 범위와 단계적 일정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는 대내외 개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경간 장벽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진입규제 및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 등 전반적 규제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종합적 규제의 총람을 작성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범부처간 조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규제의 완화와 시장개방계획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이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개방효과를 계획보다 앞당겨 발생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와 외국인투자 행정체계의 강화

- OECD 투자환경 점검리스트(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활용한 투자 환경의 평가와 개선작업 추진
- OECD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서 제시된 10가지 정책분야(총 82개 체크문항)에 - 투자정책, 투자촉진 및 원활화, 무역정책, 경쟁정책, 조세정책, 기업지배구조, 책임있는 기업 행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공공가버넌스 - 걸쳐 투자환경 매력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작업을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연계하여 동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현재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이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관여하므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한편 산업자원부, IK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행정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한의 확대 필요

- IK에 파견된 파견관들에게 권한 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K의 인력풀을 지원하여 유기적 협력을 강화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과 연계하여 지원

라. R&D 부문 FDI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함.
- R&D 부문 FDI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R&D 센터 유치와 더불어 외국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과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연구 추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지원 R&D 사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지원프로젝트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글로벌 R&D 센터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R&D 투자 중 외국기업의 R&D 투자비중이 77.3%(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아일랜드와 R&D 분야의 국제화 정도가 다른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인 영국의 예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아일랜드는 외국투자기업이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이행할 경우, “Inno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며,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자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합동프로그램인 LINK 제도(Link Collaborative Research Scheme)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고급인력 유치 노력

- 2006년 IK(Invest Korea)에서 실시한 국내 R&D 관련 경영환경 평가 설문조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31.4%가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을 R&D 투자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R&D 부문 FDI의 실적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전 세계의 지역별 역량을 활용하여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국제 아웃소싱을 추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이공계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자금, 생활비, 졸업 후 취업과 장기체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마. FDI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개선 방안

■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지원체제 적용 필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대상(Target) 분야 및 선도산업을 설정하고 동 분야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
- 또한 대상(Target) 산업의 투자유치가 교육, 노동,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조세감면 기간 및 대상의 확대

- 감면대상: 현재 물류, 제조, 관광 → SOC, R&D,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
- 감면세목 : 현 법인세, 소득세 →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으로 확대

■ 규제완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추진

- 경제자유구역법의 다른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배제 필요
- 현,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수정법) 적용 배제 → 국내투자기업도 적용 배제 건의
- 노동시장 유연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규정 완화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불법파업 등에 대한 공권력의 즉각적 대응 가능, 노동위원회 조정 및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
-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용이하도록 FEZ 내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규정 완화 필요
-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외국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관련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조정(현행 50%) 필요성
-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이 타부처 소관의 기반시설 지원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율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액지원 또는 지원대상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요구됨.
- 또한 타 부처 소관사업을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부처 및 기획예산처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지원이 현행 3곳과 신규로 선정된 3곳의 실적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을 통한 성과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 재정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 회계 도입

-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탄력적 투자를 돕고 개발이익의 전용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당장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시의 일반회계 지원이 끊기게 돼 영종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개발채권 발행 등 대안을 마련한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재투자 차원에서 회계 독립이 바람직할 것임.